

제267회 임시회
광진구의회

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

2024. 2. 5.

복지건설위원회

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167
----------	------

2024. 2. 5.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4. 1. 17.
- 나. 회부일자 : 2024. 1. 25.
- 다. 상정일자 : 2024. 1. 30.

2. 안건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이종영 복지국장

나. 제출사유

2024년 구립어린이집 1개소 신규 설치 및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3개소의 변경 위탁 추진에 따라 민간운영위탁체를 선정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실시 관련 사항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 사전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구립어린이집 운영 (신규, 변경) 위탁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

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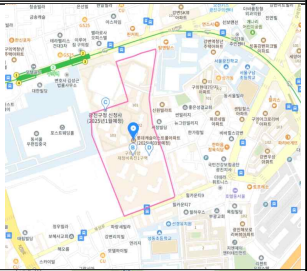



-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6조(위탁기간)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보육에 관한 다양한 전문적 지식과 운영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영유아 가정의 복지증진 및 공공성 강화에 기여
- 민간위탁을 통한 구립어린이집 보육사업 전문성 및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설 운영 제고

라. 위탁사무내용 : 구립어린이집 운영 전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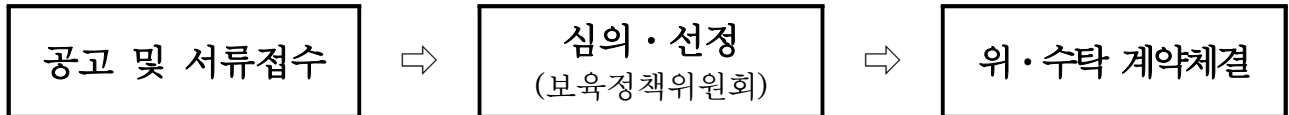
마. 위탁심의 대상 어린이집 현황

연번	어린이집명	소재지	심의 유형	現 위탁체	現 원장	규모 (㎡)	정원 (현원)	위치도
1	(가칭) 구립 자양 이스트폴 (신축, 500세대 이상)	자양동 680-63 (자양2동)	신규 위탁	-	-	793.2	미정	
2	구립 느타나무	광나루로 26길 39 (화양동)	변경 위탁	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 재단	서미경	260.28	51 (23)	
3	구립 은성	동일로4길 52 (자양4동)	변경 위탁	재단법인 대한불교 관음종	김태민	511.11	96 (80)	
4	구립 한기람	자양변영로 2길 30-1 (자양2동)	변경 위탁	사단법인 한국예술심리 상담협회	심지현	448.04	92 (65)	

바. 민간위탁기간 : 5년 ※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계약 가능

사. 수탁자 선정방식 :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(신규, 변경) 위탁 결정

- 추진절차



- 선정시기

신규 위탁	변경 위탁
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	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

- 심의항목 : 어린이집 운영계획, 운영체 대표 및 원장(내정자)의 전문성, 운영체의 보육·복지시설 운영 실적, 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, 운영체의 재정 능력

- 선정방법 : 서류(정량평가) 및 대면 심사(정성평가)를 거쳐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산정

- 선정기준 : 평균 점수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 위탁체 결정

※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, 위탁체 공개모집 재공고 추진

아. 위·수탁 (신규·변경) 계약체결

- 어린이집 운영시간 및 수탁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

- 사업 수행 및 중대재해 예방, 관계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

- 운영비 관리·집행 및 정산·반환, 지도·점검에 관한 사항

- 평가 및 민·형사상 책임,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- 그 밖에 위탁 사무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등

※ 대상 구립어린이집 위탁 기간 현황

연번	어린이집 명	심의유형	現 위탁기간 (장기입차계약기간)	(위탁체 결정 시) 위탁 기간
1	(가칭) 구립 자양 이스트폴 (신축, 500세대 이상)	신규 위탁	-	개원일부터 5년 (2025. 6월 예정)
2	구립 느티나무	변경 위탁	'20.01.01.~'24. 12. 31.	'25.01.01.~'29. 12. 31.
3	구립 은성	변경 위탁	'20.01.01.~'24. 12. 31.	'25.01.01.~'29. 12. 31.
4	구립 한가람	변경 위탁	'20.03.01.~'25. 02. 28.	'25.03.01.~'30. 02. 28.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윤선영)

- 의안번호 제2167호 「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」은 2024년 1월 17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1월 25일 복지건설 위원회에 심사·회부된 안건으로,
- 신규 설치 1개소 구립 어린이집의 신규 위탁 및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3개소 구립 어린이집의 변경 위탁 추진에 따라 민간운영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¹⁾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
- 사전 동의 대상인 신규위탁 구립어린이집은 2025년 6월부터 위탁 예정으로 793.2㎡ 규모에 광진구청 신청사 부지에 위치하며, 변경위탁 어린이집은 구립 느티나무, 은성, 한가람 어린이집으로 3개소임

1)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- 신규위탁 :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
- 변경위탁 :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, 재위탁 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 경쟁으로 신청하는 경우(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 참여 가능)

□ 위탁기간은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조례」에 따라 5년²⁾으로 하고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함

〈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〉

○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**70점 이상의 최다 득점 위탁체 선정**

- 사전심사 : 심사 기준표에 따른 배점 부여
- 대면심사 : 신청자 발표 및 질의·응답

※ 배점기준표

연번	심사항목	배점	세부항목
1	운영체의 어린이집 운영계획	40	-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- 특별활동 운영계획 -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
2	원장(내정자)의 전문성	35	- 평가제 참여여부 및 근무경력 등
3	운영체의 보육·복지시설 운영 실적	10	- 운영체의 보육관련 운영실적 및 지역사회 기여도
4	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	10	- 운영체의 법적·도덕적 건정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
5	운영체의 재정능력	5	-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

2) 제16조(위탁기간)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**5년**으로 하며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.

☞ 위탁선정시기 : 보건복지부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신축시설 신규위탁의 경우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, 재위탁은 계약만료일 3개월 이전, 변경위탁은 2개월 이전에 위탁체 선정 완료하도록 권장

□ 종합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1개소 신규 설치 구립어린이집 신규위탁 및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3개소 구립어린이집 변경위탁 추진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음
-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 다만 추후에는 구의회 사전 동의를 취지를 감안하여 위탁체 선정일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의회운영일정을 참고하여 안전 제출일을 결정해야 할 것임
- 검토결과, 관련 법령에 위배됨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회의록 참조

5. 토론

- 회의록 참조

6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